붙임

특수화장품 변경사항 분류표

연번	변경사항	분류
1	원료 품질규격①변경	중대 변경
2	생산공정 개요②변경	
3	제품 분류③변경	
4	사용기한 연장 변경	
5	제품 안전성 평가자료 변경	
6	사용방법 변경	
7	안전 경고문구 변경	
8	「화장품안전기술규범」 개정에 따른 처방 변경④	
9	기타 중대 사항	
10	처방 중 원료 명칭 규범화, 처방 비고 변경, 복합원료 중 효능성분 명시, 분사제 기재 규범화	중등 변경
11	생산장소 변경 또는 추가	
12	미생물 및 이화학 지표와 품질관리 조치 변경	
13	보관조건 변경	
14	제품 표시 견본(제품명 포함) 변경	
15	신청자료 중 문자 오류 등의 정정	

16	원료 생산업체, 품질규격⑤ 추가 또는 변경	경미 변경
17	생산공정 개요⑥변경	
18	제품 분류⑦변경	
19	사용기한 단축 변경	
20	「화장품안전기술규범」 개정에 따른 자체 유지·관리⑧	

주: ①원료 품질 보장을 위하여 첨가한 미량의 안정제, 산화방지제, 보존제 등 성분이 변경되고, 원료 중 주요 기능성분의 함량 및 용매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.

②안전성 평가 또는 효능평가 자료의 조정이 수반되는 경우.

③이 표의 연번 18 은 제외한다.

④「「화장품안전기술규범」 개정 내용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」(2026 년 제 99 호)에 해당하는 처방 변경사항.

⑤원료 중 구체적인 성분의 종류 및 비율이 모두 변경되지 않은 경우.

⑥안전성 평가 또는 효능평가 자료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.

⑦염모, 펌, 기미제거·미백, 자외선차단, 탈모방지 및 새로운 효능 표방 외의 효능 표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.

⑧「「화장품안전기술규범」 개정 내용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」(2026 년 제 99 호)에 해당하는 자체 유지·관리 사항.